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가단12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소송구조)

피 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0. 10. 30.

판결 선고 2020.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1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0. 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2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5. 1.

14.부터 2020. 1. 13.까지의 차임은 총 1,411,312원이고, 그 다음날인 2020. 1. 14.부터는 월

23,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4.부터 2020. 1. 13.까지의 부당이득금 1,411,312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지정·사용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0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B우회도로(국도C선)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지정·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부당이득이나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부당이득이나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의 과실에 준하며, 한편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 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 99㎡

(2) 경기도 남양주시
 호 묘지 28㎡

(3) 경기도 남양주시
 호 묘지 36㎡